



---

# 의정활동보고서

---



285회 제1차 정례회(2016. 6. 10 ~ 6. 24)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10대  
경상북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10대 전반기 의회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대외적으로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전반기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  
으로 후반기에는 보다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도민으로  
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 중에는 산림비즈니스연구회와 해양발전연구회의 세미나,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연찬회,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배한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이수경·김위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취업 프로젝트 선포식, 제11회 경북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등 당면한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기존 남북 위주의 국토성장에서 탈피, 동서축의 발전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도청~세종시 간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신규사업들의 국책사업화에 주력하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국비확보 12조 2000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의회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더불어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서 제3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함은 물론, 아시아 관광의 중심나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예년에 비해 가뭄사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비상급수대책 마련,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취약 시설과 위험 지역을 미리 살피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결산검사, 각종 조례안 등 안전심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 시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우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어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대 진

## 차 례

|                      |    |
|----------------------|----|
| I. 개 황               | 9  |
| II. 의사일정             | 11 |
| III. 의안처리            | 17 |
| IV. 민원처리             | 18 |
| V. 본회의 보고사항          | 20 |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30 |
| □ 장영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30 |
| □ 김종영 의원(교육위원회)      | 38 |
|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48 |

부 록

|  |     |
|--|-----|
|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26건) ..... | 61  |
| <input type="checkbox"/> 결 산 안( 2건) .....  | 210 |
| <input type="checkbox"/> 동 의 안( 1건) .....  | 213 |
|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1건) .....  | 216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안( 1건) .....  | 219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85회 정례회는 2016년 6월 10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6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0일(금)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서명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구미출신 장영석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금) 11시에 개의하여 명현관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의 연설과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결산심사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하며 이번 정례회가 우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다음 회기는 제286회 제1차 임시회로 2016년 7월 4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정례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 다. 집회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14:0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6년 6월 10일 ~ 6월 24일(15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5회)
  - 위원회

(단위 : 회)

| 구 분 | 계   | 의회<br>운영 | 기획<br>경제 | 행정<br>보건<br>복지 | 문화<br>환경 | 농수산 | 건설<br>소방 | 교육 | 특 위 |    |
|-----|-----|----------|----------|----------------|----------|-----|----------|----|-----|----|
|     |     |          |          |                |          |     |          |    | 예결  | 기타 |
| 금 회 | 6   | 1        | -        | 1              | -        | 1   | 1        | -  | 1   | 1  |
| 누 계 | 234 | 19       | 30       | 32             | 25       | 24  | 25       | 24 | 38  | 17 |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0.(금)<br>14:10<br>(제1차) |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보고<br><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li> <li>○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li> <li>○ 휴회의 건</li> </ul>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영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li>○ 김종영 의원(교육위원회)</li> <li>○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ul>   |     |
| 6. 24.(금)<br>11:00<br>(제2차) | <input type="checkbox"/> 전라남도의회 의장(명현관) 연설<br><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li> <li>○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li> </ul> |     |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p>6. 24.(금)<br/>11:00<br/>(제2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통합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li> <li>○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li> <li>○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li> <li>○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li> </ul> |     |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0.(금)<br>10:50<br>(제1차) |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li> <li>○ 제2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li> <li>○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li> </ul> |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3.(월)<br>10:50<br>(제1차) |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경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br/>(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자치행정국,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li> <li>○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     |

<농수산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3.(월)<br>10:20<br>(제1차) |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li> </ul> |     |

<건설소방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3.(월)<br>10:40<br>(제1차) |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li> <li>○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지역균형건설국)</li> <li>○ 경상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민안전실)</li> <li>○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li> </ul>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23.(목)<br>10:40<br>(제15차) |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br>○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6. 13.(월)<br>10:40<br>(제6차) |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br>○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Ⅲ. 의안처리

####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단위 : 건)

| 구 분         | 접 수<br>(부의) | 처 리<br>(가+나+다) | 의 결         |             |             |           |          | 철회<br>(나) | 보류<br>(다) | 비고       |  |
|-------------|-------------|----------------|-------------|-------------|-------------|-----------|----------|-----------|-----------|----------|--|
|             |             |                | 계<br>(가)    | 가 결         |             | 부 결       | 폐 안      |           |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
| 계           | 37<br>(375) | 37<br>(375)    | 35<br>(370) | 30<br>(323) | 5<br>(45)   | 0<br>(2)  |          | 1<br>(4)  | 1<br>(1)  |          |  |
| 조<br>례<br>안 | 소 계         | 27<br>(235)    | 27<br>(235) | 26<br>(230) | 21<br>(202) | 5<br>(26) | 0<br>(2) |           | 1<br>(4)  | 0<br>(1) |  |
|             | 의 회<br>제 안  | 20<br>(115)    | 20<br>(115) | 19<br>(112) | 14<br>(100) | 5<br>(12) |          |           | 1<br>(2)  | 0<br>(1) |  |
|             | 도지사<br>제 출  | 3<br>(80)      | 3<br>(80)   | 3<br>(80)   | 3<br>(71)   | 0<br>(9)  |          |           |           |          |  |
|             | 교육감<br>제 출  | 4<br>(40)      | 4<br>(40)   | 4<br>(38)   | 4<br>(31)   | 0<br>(5)  | 0<br>(2) |           | 0<br>(2)  |          |  |
| 규 칙 안       | 0<br>(2)    | 0<br>(2)       | 0<br>(2)    | 0<br>(2)    |             |           |          |           |           |          |  |
| 예산·결산       | 2<br>(20)   | 2<br>(20)      | 2<br>(20)   | 2<br>(9)    | 0<br>(11)   |           |          |           |           |          |  |
| 동의·승인       | 2<br>(27)   | 2<br>(27)      | 1<br>(27)   | 1<br>(19)   | 0<br>(8)    |           |          |           | 1<br>(0)  |          |  |
| 건의안         | 0<br>(1)    | 0<br>(1)       | 0<br>(1)    | 0<br>(1)    |             |           |          |           |           |          |  |
| 결의안         | 1<br>(16)   | 1<br>(16)      | 1<br>(16)   | 1<br>(16)   |             |           |          |           |           |          |  |
| 기 타 안       | 5<br>(74)   | 5<br>(74)      | 5<br>(74)   | 5<br>(74)   |             |           |          |           |           |          |  |



나. 처 리

(단위 : 건)

| 위 원 회       | 처 리       |           |     |     |            | 처리중 |
|-------------|-----------|-----------|-----|-----|------------|-----|
|             | 계         | 처 리       | 불수리 | 취 하 | 타기관<br>이 송 |     |
| 계           | 3<br>(60) | 3<br>(59) | (1) |     |            |     |
| 의회운영        | (1)       | (1)       |     |     |            |     |
| 기획경제        | (2)       | (2)       |     |     |            |     |
| 행 정<br>보건복지 | 1<br>(11) | 1<br>(11) |     |     |            |     |
| 문화환경        | 2<br>(8)  | 2<br>(8)  |     |     |            | 1   |
| 농 수 산       | (3)       | (3)       |     |     |            |     |
| 건설소방        | 1<br>(26) | 1<br>(25) | (1) |     |            | 1   |
| 교 육         | (8)       | (8)       |     |     |            |     |
| 특별위원회       | (1)       | (1)       |     |     |            |     |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31건(조례안 26, 결산안 2, 동의안 1, 기타안 1, 결의안 1)

2. 처리안건 : 31건

○ 가결 31건 - 조례안 26, 결산안 2, 동의안 1, 기타안 1, 결의안 1

3. 조례안 : 26건

1.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호 의원 외 32인, 2016. 5. 30.)
2.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오세혁 의원 외 3인, 2016. 5. 30.)
3.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천희 의원 외 11인, 2016. 5. 30.)
4.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 외 2인, 2016. 5. 30.)
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용 의원 외 14인, 2016. 5. 30.)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2016. 5. 30.)
7.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상구 의원 외 9인, 2016. 5. 30.)
8.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배영애 의원 외 10인, 2016. 5. 30.)
9.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윤종도 의원 외 10인, 2016. 5. 30.)
10.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한혜련 의원 외 10인, 2016. 5. 30.)
11.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진락 의원 외 10인, 2016. 5. 30.)
12.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영서 의원 외 8인, 2016. 5. 30.)
1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영석 의원 외 14인, 2016. 5. 30.)
14.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2016. 5. 30.)
15.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현국 의원 외 11인, 2016. 5. 30.)

1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주홍 의원 외 11인, 2016. 5. 30.)
17.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 외 10인, 2016. 5. 30.)
18.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권현 의원 외 24인, 2016. 5. 30.)
19.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2016. 5. 30.)
20.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상구 의원 외 10인, 2016. 5. 30.)
21.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이동호 의원 외 10인, 2016. 5. 30.)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2016. 5. 30.)
2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2016. 5. 30.)
2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2016. 5. 30.)

25.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김봉교 의원 외 1인, 2016. 5. 30.)
26.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2016. 5. 30.)

4. 의안 접수 내용 : 31건(조례안26 <의원 19, 도지사3, 교육감 4>, 결산안2, 동의안1, 결의안1, 기타안1)

| 연번 | 제출(발의)자<br>(접수일)               | 안건명   | 소관<br>상임위원회     |
|----|--------------------------------|---|-----------------|
| 1  | 도지사<br>(2016. 5. 30.)          |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각 상임위원회<br>예결특위 |
| 2  |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기획경제위원회         |
| 3  | 김병호 의원 외 32인<br>(2016. 5. 30.)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4  | 오세혁 의원 외 3인<br>(2016. 5. 30.)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 5  | 남천희 의원 외 11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6  | 김정숙 의원 외 2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7  | 김수용 의원 외 14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8  | 도지사<br>(2016. 5. 3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9  | 이상구 의원 외 9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문화환경위원회         |
| 10 | 배영애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 11 | 윤중도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                 |

| 연번 | 제출(발의)자<br>(접수일)               | 안건명                                      | 소관<br>상임위원회 |
|----|--------------------------------|--|-------------|
| 12 | 한해련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 문화환경<br>위원회 |
| 13 | 이진락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br>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14 | 박영서 의원 외 8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br>조례안             |             |
| 15 | 장영석 의원 외 14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 16 | 도지사<br>(2016. 5. 30.)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17 | 박현국 의원 외 11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br>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18 | 조주홍 의원 외 11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19 | 이동호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20 | 박권현 의원 외 24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br>관한 조례안           |             |
| 21 | 도지사<br>(2016. 5. 30.)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br>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22 | 정상구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br>관한 조례안          | 건설소방<br>위원회 |
| 23 | 이동호 의원 외 10인<br>(2016. 5. 30.)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br>향상 지원 조례안      |             |

| 연번 | 제출(발의)자<br>(접수일)              | 안건명  | 소관<br>상임위원회 |
|----|-------------------------------|--|-------------|
| 24 | 교육감<br>(2016. 5. 30.)         |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br>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교육위<br>예결특위 |
| 25 | "                             | 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위<br>위원회  |
| 26 | "                             | 경상북도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                 |             |
| 27 | "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br>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28 | 김봉교 의원 외 1인<br>(2016. 5. 30.)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br>조례안                      |             |
| 29 | 교육감<br>(2016. 5. 30.)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br>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30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조례정비<br>특위  |
| 31 | 원자력안전특별<br>위원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br>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         | 원자력안전<br>특위 |

## 5. 조례 공포 사항 : 26건

| 이송일         | 이송처         | 안 건 명  | 공포일                      |
|-------------|-------------|--|--------------------------|
| '16. 6. 2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6. 6. 30.<br>(제3789호) |
| "           | "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790호) |
| "           | "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791호) |
| "           | "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br>전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792호) |
| "           | "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793호) |
| "           |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br>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794호) |
| "           | "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2016. 7. 11.<br>(제3795호) |
| "           | "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2016. 7. 11.<br>(제3796호) |
| "           | "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 2016. 7. 11.<br>(제3797호) |
| "           | "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2016. 7. 11.<br>(제3798호) |
| "           | "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799호) |
| "           | "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800호) |
| '16. 6. 2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801호) |

| 이송일         | 이송처           | 안 건 명                                      | 공포일                      |
|-------------|---------------|--|--------------------------|
| '16. 6. 2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802호) |
| "           | "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br>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16. 7. 11.<br>(제3803호) |
| "           |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일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804호) |
| "           | "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br>개정조례안         | 2016. 7. 11.<br>(제3805호) |
| "           | "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br>조례              | 2016. 7. 11.<br>(제3806호) |
| "           | "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br>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6. 7. 11.<br>(제3807호) |
| "           | "             | 경상북도 사회재단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br>조례             | 2016. 7. 11.<br>(제3808호) |
| "           | "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br>향상 지원 조례         | 2016. 7. 11.<br>(제3809호) |
| '16. 6. 24. | 경상북도<br>교 육 청 | 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         | 2016. 6. 30.<br>(제3784호) |
|             | "             | 경상북도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br>개정조례             | 2016. 6. 30.<br>(제3785호) |
|             | "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br>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6. 6. 30.<br>(제3786호) |
|             | "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2016. 6. 30.<br>(제3787호) |
| '16. 6. 24. | 경상북도<br>교 육 청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br>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6. 6. 30.<br>(제3788호) |

## 6.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 위원회           | 일자                          | 장 소           | 참 석 의 원             | 활 동 내 용  |
|---------------|-----------------------------|---------------|---------------------|--|
| 의회운영위원회       | 6. 1.(수)<br>~<br>6. 3.(금)   | 제 주 도 원       | 홍진규<br>위원장 외<br>1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li> <li>-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성과 및 현안사항 토론</li> <li>- 우수관광 프로그램 개발사례 벤치마킹</li> </ul>              |
| 기획경제위원회       | 5. 20.(금)                   | 위 원 회 실       | 김희수<br>위원장 외<br>4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위원 방문 간담회</li> <li>- 상생협력 방안 협의</li> </ul>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5. 30.(월)<br>~<br>6. 1.(수)  | 제 주 도 원       | 이태식<br>위원장 외<br>1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li> <li>- 관광개발분야 등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체험 및 활용방안 토론</li> <li>- 예결위 운영성과 및 결산심사 방향 토론 등</li> </ul>  |
| 윤리특별위원회       | 5. 23.(월)<br>~<br>5. 24.(화) | 문 경 시 영 주 시 원 | 배한철<br>위원장 외<br>6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윤리특별위원회 연찬회</li> <li>- 경북의 선비문화 체험 등 지방의원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li> <li>-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초청 합동토론회 개최</li> </ul> |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5. 10.(화)<br>~<br>5. 11.(수) | 포 향           | 이정호<br>위원장 외<br>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연찬회</li> <li>- 전반기 독도특위 활동사항 공유</li> <li>- 향후 특위일정 논의 등</li> </ul>                                  |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6. 7.(화)<br>~<br>6. 8.(수)   | 울 진 군 원       | 곽경호<br>위원장 외<br>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연찬회</li> <li>- 조례정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토론 등</li> </ul>  |
| 산림비즈니스연구회 세미나 | 5. 19.(목)<br>~<br>5. 20.(금) | 영 충 주 주       | 김봉교<br>의원 외<br>9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합경영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 세미나</li> <li>• 현장 방문 : 국립산림약용자원 연구소, 보리 숲 밤농장</li> </ul>                                   |
| 해양발전연구회 세미나   | 5. 24.(화)<br>~<br>5. 25.(수) | 포 향           | 한창화<br>의원 외<br>1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신동해안 발전 전략세미나</li> <li>• 현장 방문 : 영일신항만, 포항운하</li> </ul>  |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장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질문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남부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청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북 북부권 중심의 신도청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진 서남부권 도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아쉬운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북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 곳곳이 골고루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도청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거리도 커진 만큼 신도청과 각 시·군을 잇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경북지역이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고, 다시 한 번 응비하기 위해서는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 시민들은 신청사가 안동·예천 일원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 대구 청사에 비해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도청시대를 맞아 북부권역과의 취약한 교통망이 하루빨리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미의 입장에서 볼 때 신도청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확충이 절실합니다.

구미와 군위IC를 잇는 국도 67호선 도로 확장을 통해 신도청 이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2019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구평IC와 중앙고속도로의 가산IC를 잇는 지방도 514호선 도로 확장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상주~영천 간 고속

도로에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제5구미국가산업단지와  
군위 소보IC를 잇는 지방도 927호선 도로 확장도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청과 구미를 잇는 직통 고속도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주~영천 고속  
도로와 보령~울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구미, 신도청, 영주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쾌속 교통망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구미는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경북 산업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대구, 포항 등과 함께 서남부권의  
경제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표 프로젝트인 대구권 광역  
철도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연장 61.85km의 구간에 1300여 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계획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부터 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목표인 201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구미, 경산, 칠곡 등 관련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여 사업비 분담, 운영주체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협의하여 서남부권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예천이 신도청시대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미는 경제수도로서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각종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김관용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지역 경기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의 생산과 출하가 부진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최근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국 평균이 107.7인 데 비해 경북은 94.8로 매우 낮고, 부도율은 0.17%인 데 비해 경북은 0.72%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북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의 경기침체는 매우 심각해서 역외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공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 및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주문량 감소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실업자 수 증가 등의 조짐이 지역경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구미시내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황을 더더욱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5조 원을 넘었던 구미의 총생산액은 3년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지난해 10월 기준 41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공장 가동률은 2010년 88.9%에서 2015년 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해외자본 유입, 고용창출, 국내기업과의 동반상생을 모색하였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용, 생산, 수출 등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미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구미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41.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체 종사자 수,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구미의 실업률은 5.3%로 시지역 평균 2.8%, 군지역 평균 1.3%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미의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미 지역의 경기침체가 경상북도는 물론 인근지역인 대구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침체된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노후단지를 리모델링하여 혁신단지화하며,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는 차세대 먹거리산업에 있어 융복합 탄소성형부품단지 클러스터, 국방ICT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재도약의 청사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지하수 식수사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23개 교육지원청별 학교 내 지하수 식수사용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아직도 포항 등 7개 시·군 소속 학교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2014년은 31개 학교, 2015년은 27개 학교, 2016년은 24개 학교가 아직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전염병 발생 등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김천교육청 관내 지하수 식수사용 학교가 9개교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포항·상주·청도·성주가 3개교, 봉화가 2개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주는 2011년까지는 도내 전체 지하수 식수사용 학교의 22%를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3개교만 남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례로 2015년 말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 즉 중금속, 농약, 심지어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물의 경우도 각종 가축매몰에 따른 오염수, 중금속, 농약 등이 인근 지하수로 유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보건위생 차원에서 하루빨리 광역상수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천, 포항, 상주, 청도, 성주, 칠곡, 봉화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가 아직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초등학교가 과반을 넘고 있는데 언제쯤 완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기찬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도정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  
라고 판단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날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매년 장마철만 되면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수지 관리 문제'라고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전남 다음으로 우리 경북이  
재해 위험 저수지가 많은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에 맞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저수지 현황을 파악한 바 우리 도에 있는 저수지는 전국 저수지  
1만 7505개소의 32%에 해당하는 5544개소입니다. 이 중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641개소이고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903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 4903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4814개소,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3876개소, 79.1%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너무  
미흡해서 사고 발생 시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여름, 경주 북군저수지와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안전등급 D와 E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모두 354개소이며, 이 중 대부분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고 판단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전남이 131곳, 경북은 59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해위험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충분한 보수·보강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시·군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을 만큼 뼈든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도내에서도 저수지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다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유지·관리 예산이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데다 시·군 차원의 저수지 관련 예산 자체가 극히 적어 평시 관리 면에서나, 특히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3225억 원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1378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군 관리 저수지는 2012년까지 연평균 67억 원 정도였으나 2013년 경주 안강 산대저수지와 군위 의흥수태저수지 붕괴사고 이후 100억 원대로 증액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중앙-지방 5대 어젠다에 포함되어 국정시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전등급 면에서 보면 주요 부재(部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90개소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229개소나 됩니다. 특히 2014년 사고가 발생했던 영천 괴연저수지, 영덕 부미골저수지, 경주 북군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되어 70년이 넘는 저수지인데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군 관리 저수지 수리시설은 수해농민이 300평당 약 4,5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 개선은 중앙-지방 상생협력 5대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점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저수지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 2곳에서 작년에 5곳으로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향후 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문 인력에 의한 물 관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위험부담이 없는 수리시설 등 모든 면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도 깊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그나마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들은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서 저수지 상태가 어떠한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저수지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수지 붕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년 내지 7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 때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논과 밭에 관개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등 농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수답 역할을 하였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낚시터, 유원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따른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도 차원에서 전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다시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등 전면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TV 뉴스를 통해 '지문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장애아동과 치매노인 등이 가족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는 어린 아동부터 가출 청소년, 지적장애인이거나 치매환자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시행해왔으며, 그동안 실종자들을 찾는 데 상당히 기여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경상북도내 지문사전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 수는 53만 715명이고, 이 중 등록자 수는 15만 8,625명으로 지문사전등록자는 약 3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문사전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사회적 관심 부족과 홍보 미비, 지문등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종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현황 자료를 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 후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2008년 전체 대상자의 0.16%에서 2011년 1.84%, 2013년 2.1%, 2014년 2.3%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선진국 언론에서 실종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종아동, 치매환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가정은 생업을 소홀히 해가면서 실종자를 찾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도 산업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실종사건 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종자 방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전면 실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등록대상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하여 등록대상자를 연도별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반상회, 방송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종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목걸이용 전자기기 부착 같은 것도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북 농촌인구 중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 13.3%, 2000년 14.1%, 2005년 15.6%, 2010년 16.5%, 2014년 17.3%, 2015년 17.8%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도내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2013년 11만 4,72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25.5%이며, 2014년 26.2%, 2015년에는 13만 9,876명으로 29.2%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혼자 지내다보니 거의 방임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보호체계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 중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과 노인 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 등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장에서 볼 때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은 시설생활자 보호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보호조치가 어렵고,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도 자식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활환경상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홈을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 1명의 친구를 만들어 고독사 및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 받거나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설입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임 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에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군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식들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인만 홀로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들 노인들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고향 집을 지키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개발과 지원인력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주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 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는 19세 꿈 많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철저한 예방만이 사고발생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 도내 공사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관할 주도로서 본 의원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무책임한 도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지난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래 지난 10년 간 독도를 찾은 방문객이 156만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독도 입도에 성공한 방문객은 121만여 명으로 78% 정도 됩니다. 결국 20%가 넘는 34만여 명의 관광객이 독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으며, 기상조건 등이 좋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도 불과 15분 정도의 체류시간으로 기념사진 한 장 찍기 바쁘게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지에서 독도까지 가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독도를 찾아가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부족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독도정책에 대해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선박의 접안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공항마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바다를 메울 피복석은 인근 산을 벌채하여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업체는 피복석 강도가 맞지 않고 물량이 부족하여 육지에서 조달할 경우 예정가격 예산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입찰을 포기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울릉공항건설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상북도민이며 이에 경상북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km, 일본보다 세 배 가까이 위치해 있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보면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의 실지 회복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부산·경남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독도 문제로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을 종결시키고 대마도 또한 한국의 오랜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를 방문하는 78%의 방문객만이 독도 땅을 밟는 상황에서 독도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독도 입도시설 공사 중단은 우리의 주권적 행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공사 재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소 2, 3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숙박까지 가능하여 독도를 마음껏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해상크루즈호텔, 독도해저생태계를 볼 수 있는 독도탐험 프로그램, 선상낚시체험, 오징어회 등 해산물 시식을 위한 시설 설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의 환경·생태적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의 개발을 통해 독도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과거 일본의 생태파괴 만행 등으로 독도의 강치들이 멸종되었지만 강치가 멸종되었다고 독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환경 생태 보전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독도개발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의 망언 등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술한 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였으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독도 또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독도 역시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토방위수호의 책임은 국군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포항의 해병대 등 국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고증, 법적 근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독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관점의 추세는 사람과 주민을 최우선 중시하는 상황에서 유인도의 경우 대부분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영유권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법 환경의 추세입니다. 현재 한 가구가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 10가구 정도 이상은 상주하여 상업활동 등을 통한 해양마을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울릉공항 건설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모섬인 울릉도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이며,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독도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울릉

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전쟁 현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에서 참전군경과 학도병 등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난날 역사의 고난 속에서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충혼탑, 기념공원 등 현충시설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후세에게 전쟁의 참상과 아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6·25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좌초위기여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한 영덕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비 77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 복원 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수립과 설계가 잘못되었고 태풍과 과도

등으로 크랙과 누수, 변형 등 안전문제 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도 감사에서 해당 사업 추진 지자체인 영덕군이 기관경고를 받을 만큼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공기지연과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한 향후 사업비 조달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건립된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경우 충혼탑 시설의 유지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상황입니다. 1,394위 학도병들의 영령을 모신 전몰학도 충혼탑까지의 계단은 너무 가팔라서 젊은 사람조차 오르기 힘들며, 위패조차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25참전 유공자가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단을 오르다 혹여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앓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은 15대 정도의 차량만 수용이 가능하여 방문객 주차불편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현황을 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은 1981년 개관 이후 2003년 90만 3,000명이 다녀간 것을 정점으로 2010년 62만 명, 2014년 45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6·25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비 77억 원을 포함하여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 복원사업이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지경이 되도록 경북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기는 기념사업에는 이익보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업체선정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복원된 배가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경북도에서 향후 문산호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이며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6·25 기념시설물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의 장이며, 호국의 성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호국평화의 성지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전시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당시의 군장과 당시 상황 재연으로 참호에서 전투를 경험하는 등 전쟁체험을 통해 그때의 군인, 학도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호국안보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의 생활 속에 애국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경북을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는 만큼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곳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갖가지 생활용품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과다 중금속이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25곳의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곳의 학교에서 한국 산업표준 납 기준치 kg당 90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금속 검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뇌신경에 영향을 주고 간, 신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해성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교육부에서 6월말까지 전국 2,811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 중금속 오염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우레탄트랙에 앉아 쉬면서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역장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까지 우선 조사가 완료된 143개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51개교의 운동장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경기도교육청은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된 284개교 중 62.7%인 183개교에 대해 운동장 긴급 사용 중단과 더불어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선제 적인 안전조치로 우레탄트랙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도내 161개교가 우레탄트랙을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전에 조성된 101개교의 경우 납 성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조성된 60개교의 안전성 또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허술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가 불거져 인조잔디를 걷어냈을 당시 인조잔디를 둘러싼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또한 당연히 함께 점검했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6월 말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시설 사용금지 등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지사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 록

|  |     |
|--|-----|
|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26건) ..... | 61  |
| <input type="checkbox"/> 결 산 안( 2건) .....  | 210 |
| <input type="checkbox"/> 동 의 안( 1건) .....  | 213 |
|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1건) .....  | 216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안( 1건) .....  | 219 |



##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한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시·군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조사·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13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한 규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정 제안함.

### 2. 주요내용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수정안 :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없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b>제3조(도지사의 책무)</b></p> <p>① 경상북도지사<br/>(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한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       | <p><b>제3조(도지사의 책무)</b></p> <p>경상북도지사<br/>(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lt;삭 제&gt;</p> |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가정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시·군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조사·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청 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다목적 공연장(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도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체육 활동 전시회, 교육, 강연회, 세미나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도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간 종료 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이용)**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이용허가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도지사는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②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도의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사용일 3일 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일부터 2일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안 제4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기념”을 “선양”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애국지사”을 “생존 애국지사”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b>“독립운동”</b>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p> <p>2. <b>“독립운동 유적지”</b>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 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의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p> <p>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p> <p>4.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lt;삭 제&gt;</p> <p>2. &lt;삭 제&gt;</p> <p>1. (개정안 3호와 같음)</p> <p>2. (개정안 4호와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p><b>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b><br/>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br/>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br/>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br/>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br/>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br/>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br/>           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 <p><b>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b><br/>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할 수 있다.<br/>           1. (개정안과 같음)<br/>           2. (개정안과 같음)<br/>           3. (개정안과 같음)<br/>           4. (개정안과 같음)<br/>           5. (개정안과 같음)<br/>           6. (개정안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 <p><b>제3조(지원사업)</b>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br/>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p> | <p><b>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b>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br/>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p>  | <p><b>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b> ① (개정안과 같음)<br/>           1. (개정안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이하 “수당”이라 한다)<br/>지급</p> <p>2.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p> <p>3. 생존 애국지사에게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p> <p>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금 지원</p> <p>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b>제4조(지원대상자)</b>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경상북도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p> | <p>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p> <p>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p> <p>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p> <p>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p> | <p>2. (개정안과 같음)</p> <p>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u>생존 애국지사</u>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생존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문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  
아를 출산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 대상)”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전문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제6조제1항 중 “둘째아 이상의”를 “신생아를 출산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소에”를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둘째아</u>”라 함은 두 번째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li> <li>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li> <li>4. ~ 7. (생략)</li> </ol> | <p><b>제2조(정의)</b>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lt;삭제&gt;</li> <li>3. —————<br/>—————</li> <li>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li> <li>4. ~ 7. (현행과 같음)</li> </ol> |
| <p><b>제5조(지원사업 대상)</b>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둘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li> <li>2. ~ 4. (생략)</li> </ol>   | <p><b>제5조(지원사업)</b> —————예산의 범위에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li> <li>2. ~ 4. (현행과 같음)</li> </ol>  |
| <p><b>제6조(출산장려금)</b></p> <p>① 도지사는 둘째아 이상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째아 이상의 부모는</p>   | <p><b>제6조(출산장려금)</b></p> <p>① ————— 신생아를 출산한 —————<br/>—————<br/>————— 신생아를 출산한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② (생략)</p>  | <p>-----.</p> <p>② (현행과 같음)</p>   |
| <p><b>제7조(지원신청·지급)</b></p> <p>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u>보건소에</u>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 <p><b>제7조(지원신청·지급)</b></p> <p>① -----<br/> <u>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신설〉</p>  | <p><b>부 칙</b></p> <p>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목장립”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5.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관리하는 공설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사문화개선 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 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의 도내 다른 시·군 화장장 이용 지원
  3. 공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장사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도내 다른 시·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도지사는 자연장지 및 수목장립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며, 장사시설 설치 완료 등 협의회 존속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지군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시군별 | 지역 및 등급 |                           |                     |   |
|------------------|-----|---------|---------------------------|---------------------|---|
|                  |     | 특 지     | 갑 지                       | 을 지                 | 병 지   |
| 벽<br>지<br>지<br>역 | 포항시 |         |                           | 죽장면 상옥리             | 죽장면 입암리   |
|                  | 김천시 |         |                           | 증산면 장진리<br>부항면 대야리  | 부항면 사등리,<br>증산면 유성리   |
|                  | 영천시 |         |                           |                     | 자양면 성곡리   |
|                  | 상주시 |         | 화북면 중벌리·<br>운흥리·입석리       | 모서면 정산리             | 화북면 용유리,<br>은척면 무릉리   |
|                  | 문경시 |         |                           |                     | 문경읍 상리,<br>가은읍 왕릉리,<br>동로면 적성리,<br>마성면 외어리                  |
|                  | 의성군 |         |                           |                     | 신평면 교안리,<br>안사면 안사리   |
|                  | 청송군 |         |                           |                     | 부동면 이천리   |
|                  | 영양군 | 수비면 송하리 | 수비면 수하리                   |                     | 청기면 청기리,<br>수비면 발리리   |
|                  | 영덕군 |         |                           | 지품면 원전리             |   |
|                  | 칠곡군 |         |                           | 동명면 득명리             |   |
|                  | 예천군 |         |                           | 상리면 고향리             |   |
|                  | 봉화군 |         | 명호면 관창리                   | 소천면 분천리,<br>재산면 동면리 | 춘향면 서벽리,<br>소천면 임기리·고선리,<br>석포면 석포리,<br>재산면 현동리,<br>명호면 삼동리 |
|                  | 울진군 |         |                           |                     | 북면 하당리  |
| 도<br>서<br>지<br>역 | 울릉군 |         | 서면 태하리·<br>남양리,<br>북면 천부리 | 울릉읍 도동리·<br>사동리·저동리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     |            |               |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     |            |     |
| 구 분                                      | 시군별 | 지역 및 등급    |               | 구 분                                      | 시군별 | 지역 및 등급    |     |
|  |     | 을 지        | 병 지           |  |     | 을 지        | 병 지 |
| 벽 지<br>지 역                               | 영덕군 | 지품면<br>원전리 | 병 곡 면<br>거무역리 | 벽 지<br>지 역                               | 영덕군 | 지품면<br>원전리 |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 적극 활용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분석 및 보급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
5.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유희공간 활용)** ① 도지사는 도 소유의 유희 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희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9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 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사업)** 도지사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민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환수사업의 지원)”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으로 하고, 제4조 중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법인”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지원율”을 “지원·육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 중 도지사가 선정한 곳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관기관 및 법인”을 “지원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관기관 및 법인”을 “지원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중 “이 조례”를 “사업의 정산 등 이 조례”로,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3조(자료의 제공)</b> ①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유관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u></p>   | <p><b>제3조(자료의 제공)</b> ① -----<br/>----- <u>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u> ---<br/>-----.</p>          |
| <p><b>제4조(환수사업의 지원)</b> 도지사는 <u>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을 추진 하는 유관기관 및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 <p><b>제4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b>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u> --- <u>지원·육성</u> -----.</p> |
| <p><b>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b><br/>① <u>유관기관 및 법인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운동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br/>② <u>유관기관 및 법인은 매 회계 년도의 보조금 결산서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u></p> | <p><b>제5조(지원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b><br/><u>제4조에 따른 지원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 중 도지사가 선정한 곳으로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u>유관기관 및 법인</u>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다.</p>                           | <p>제6조(사업의 평가 등) ① -----<br/> -- <u>지원 기관 또는 단체</u> -----<br/> -----<br/> --.</p>       |
| <p>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u>유관기관 및 법인</u>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 <p>② ----- <u>지원 기관 또는 단체</u> -----<br/> -----<br/> -----.</p>                          |
| <p>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u>」 및 「<u>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제7조(준용) 사업의 정산 등 이 조례 ----- 「<u>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u>」 -----<br/> -----<br/> -----.</p>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 이상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 조성사업
-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 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 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과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의 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사용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기준 등)** 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의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른다.

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재활용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획득한 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13일

제 출 자 : 문화환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순환골재 등의 용도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 이외의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 3. 수정안 : 붙임

###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없음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정사유  |
|---|--|---|
| <p>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p> <p>① ~ ②(생략)</p> <p>③ <u>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u></p> | <p>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lt;삭 제&gt;</p> | <p>순환골재 등의 용도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시 고시 이외의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규정은 위법 소지가 있어 삭제코자 함.</p> |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 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과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의 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사용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 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기준 등)** 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의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른다.

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재활용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획득한 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직장인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 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문화상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언론부문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술부문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3조(수상부문)</b> 문화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p> <p>1. <u>인문사회과학부문</u></p> <p>2. <u>자연과학부문</u></p> <p>3. ~ 6. (생 략)</p> <p>7. <u>언론출판부문</u></p> <p>8. (생 략)</p> <p><u>&lt;신 설&gt;</u></p> | <p><b>제3조(수상부문)</b> -----<br/>-----.</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언론부문</u></p> <p>8. (현행과 같음)</p> <p>9. <u>학술부문</u></p> |
| <p><b>제6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행정부지사, <u>문화체육국장</u>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p> <p>② · ③ (생 략)</p>   | <p><b>제6조(위원회 구성)</b> ① -----<br/>-----<br/>-----<br/><u>문화업무담당국장</u> -----<br/>-----.</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b>제7조(수상자 심사결정)</b> ① ~ ④ (생 략)</p> <p><u>&lt;신 설&gt;</u></p>  | <p><b>제7조(수상자 심사결정)</b>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u></p>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8. “농산물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농산물취급사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평가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2.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 등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또는 직거래 실적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 3.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 및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
4.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13일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일부조항의 경우 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였으나 일부 용어는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다음과 같다”를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로 수정하며, 같은 조 1호부터 9호까지는 모두 “삭제” 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이하 같은 조 1호부터 9호까지는 모두 <삭제>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
| <p>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4. _____</p> <p>5. _____</p> <p>6. _____</p> <p>7. _____</p> <p>8. _____</p> <p>9. _____</p> | <p>제2조(정의)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p> <p><u>이하 같은 조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lt;삭제&gt;</u></p> | <p>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정의</p>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평가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2.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 등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또는 직거래 실적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 및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단체 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
4.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기금사업의 대상)”을“(기금의 용도 및 대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2.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3.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제8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 중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의 같은 항 제10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 제목“(기금운영심의회 설치)”를“(기금운영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경상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8조 (기금사업의 대상) &lt;신 설&gt;</b></p> <p>②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u>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u></p> <p>10. (생 략)</p> <p>&lt;신 설&gt;</p> <p><b>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② (생 략)</b></p> <p>③ 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u>경상북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u> 대행한다.</p> <p>&lt;신 설&gt;</p> | <p><b>제8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u></p> <p>2. <u>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u></p> <p>3. <u>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u></p> <p>② _____<br/> <u>각 호 중 어느 하나와</u> —.</p> <p>1. ~ 8.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9.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p> <p><b>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_____<u>경상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 _____.</p> <p>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u></p> <p>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u></li> <li>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u></li> <li>3. <u>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li> </ol> <p>②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를 “다음  
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5. “농어업관련단체”란 도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2항의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농어업 정보지 지원 사업

제9조제1항의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를 “설치·운영 및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어업관련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능력 및 영농·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
2. 농수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어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4. 농어업관련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력기반 구축사업
5. 농어업 발전을 위한 포럼, 토론회, 연찬회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생 략)</p> <p>6.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p> <p>7. (생 략)</p> <p><b>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b></p> <p>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1. ~ 12. (생 략)</p> <p>〈신 설〉</p> <p>13. (생 략)</p> | <p><b>제2조(정의)</b> -----<br/>----- 뜻은 -- 다음과 --<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농어업관련단체</u>”란 도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br/>-----.</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b>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범위에서</u><br/>-----<br/>----- <u>각 호</u> -----<br/>-----.</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농어업 정보지 지원 사업</u></p> <p>14. (현행 제13호와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① 도는 미래를 개척할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민사관학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신설〉</p> | <p>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_____<br/>     _____<br/>     _____ 설치·<br/>     운영 및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_____<br/>     _____<br/>     _____.</p> <p>제16조의2(농어업관련단체의 지원)<br/>     도지사는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 경영능력 및 영농·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li> <li>2. 농수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사업</li> <li>3. 농어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li> <li>4. 농어업관련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력기반 구축사업</li> <li>5. 농어업 발전을 위한 포럼, 토론회, 연찬회 등 지원사업</li> <li>6. 그 밖에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전통 소싸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지역 문화레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소싸움”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싸움경기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통 소싸움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 소싸움 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사업

2. 전통 소싸움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전통 소싸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육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 소싸움 관련 시·군,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13일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도지사에게 지원 의무가 강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조항의 경우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어 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임의조항으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구하여야 한다” 를 “강구할 수 있다” 로 하며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 소  
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
| <p>제3조(도지사의 책무)<br/>           —— 강구하여야 한다.</p> | <p>제3조(도지사의 책무) ——<br/>           —— 강구할 수 있다.</p> | <p>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여<br/>           도의 재정부담 완화</p> |
|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수립·시행할 수 있다.</p>          |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전통 소싸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지역 문화레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소싸움”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싸움경기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통 소싸움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 소싸움 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사업
  2. 전통 소싸움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전통 소싸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육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 소싸움 관련 시·군,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을  
“동물 위생시험소장(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6조 중“(별지 제2호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하고,“가축 위생시험소장”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제7조 중“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을“검사수수료 및 제6조의 재발급 수수료는「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중 반복되는“가축위생시험소장”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각 항의“가축위생시험소장”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     |       |      |      |
|---|-----|-------|------|------|
|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즉 시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성적서<br>발급번호   |     | 발행년월일 |      |      |
| 신청부수  |     |       |      |      |
| 용 도   |     |       |      |      |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br>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br>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음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조례   | 개정안  |
|---|--|
| <p><u>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u></p> <p><b>제4조(검사의 신청 등)</b> 제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 서식), 위탁검사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검사대상물과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붙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b>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 <p><u>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u></p> <p><b>제4조(검사의 신청 등)</b></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동물위생시험소장</u></p> <p>(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p> <p>_____.</p> <p><b>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b> 동물위생시험소장 _____</p> <p>_____ 「식품·의약품 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 _____</p> <p>_____. 다만,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p> |

| 현행 조례  | 개정안  |
|--|--|
| <p><b>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b><br/>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b>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b> —<br/>—————<br/>—————<br/>————— (별지 서식) ——— 동물위생시험소장 —————.</p>   |
| <p><b>제7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b><br/>① 제3조 각 호의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 검사수수료는 별표와 같다.<br/>&lt;개정 '09. 11. 5., 2014. 9. 22.&gt;<br/>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에 따른다.</p> | <p><b>제7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b><br/>① ————— 검사수수료 및 제6조의 재발급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br/>—————<br/>—————<br/>—————<br/>—————</p>                    |
| <p><b>제8조(수수료의 면제)</b>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 등을 위하여 의뢰하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 <p><b>제8조(수수료의 면제)</b>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br/>1.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우<br/>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p> |

| 현행 조례   | 개정안   |
|---|---|
| <p><b>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b> <u>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p> <p><b>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b> ① <u>가축위생시험소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u><br/> ② <u>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경상북도보 또는 축산 관련 신문 등에 공고 할 수 있다.</u></p> | <p>3. <u>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u><br/> 4. <u>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u><br/>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u></p> <p><b>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b> <u>동물위생시험소장</u> _____<br/> _____<br/> _____ 동물<br/> 위생시험소장 _____<br/> _____.</p> <p><b>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b> ① <u>동물위생시험소장</u> _____.</p> <p>② <u>동물위생시험소장</u> _____.</p> |

| 현행 조례  |  |       |      |            | 개정안  |    |       |      |            |
|--|--|-------|------|------------|--|----|-------|------|------------|
| [별지 제1호 서식]<br>[별지 제2호 서식]                               |  |       |      |            | <삭제><br>[별지 서식]  |    |       |      |            |
|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  |       |      | 처리기간<br>즉시 |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    |       |      | 처리기간<br>즉시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주소 |       |      |            |
| 성적서<br>발급번호  |  | 발행년월일 |      |            | 성적서<br>발급번호  |    | 발행년월일 |      |            |
| 신청부수   |  |       |      |            | 신청부수   |    |       |      |            |
| 용도   |  |       |      |            | 용도   |    |       |      |            |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br>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 년 월 일<br>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  |  |       |      |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 구비서류 없음  |    |       |      |            |
| 없음   |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br>2. 영문번역본 1부당 200원 |       |      |            |  |    |       |      |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 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을 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시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 등)**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 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휴대폰)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

### 2. 피해자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휴대폰) |                 |
| 세대주여부 |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 가족 수      | 명(본인포함 세 대원)    |
| 고등학생수 | ( ) 고등학교   | 명         |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3. 피해내용

|          |                 |   |     |     |     |
|----------|-----------------|---|-----|-----|-----|
| 피해 발생 일시 |                 |   |     |     |     |
| 피해 발생 장소 |                 |   |     |     |     |
| 인명<br>피해 | 신고              | [ ] 사망·실종, [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     |     |
|          | 확정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br>[ ] 사망·실종, [ ] 부상(부상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     |     |
| 시설<br>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          | 총면적<br>(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          | 면허·허가·<br>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신고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물량<br>확정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      |
|------------------|---|------|
| 동일세대 신청 여부       | 여 <input type="checkbox"/> , 부 <input type="checkbox"/> | 내용 : |
| 타시·군·구<br>피해신고여부 | 여 <input type="checkbox"/> , 부 <input type="checkbox"/> | 내용 :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 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가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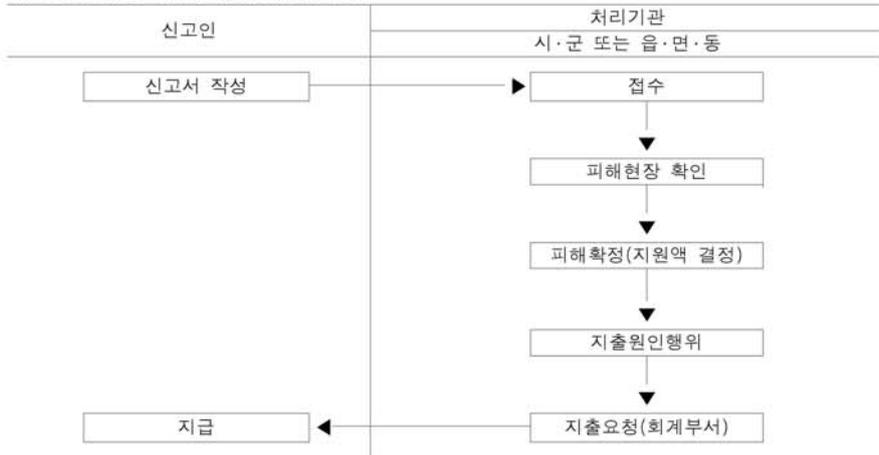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입주자의 자활 증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
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3.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촉진 및 활성화
5.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6.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0.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
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그 외의 예산신청 및 정산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사립 소속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b></p> <p>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10. (생략)</p> <p>〈신설〉</p> | <p><b>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b></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사립 소속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u></p>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  
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지원국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3조2(한시기구의 설치) 한시기구로</u><br/><u>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u></p> | <p><u>제3조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u><br/><u>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u><br/><u>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북</u><br/><u>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u><br/><u>기구를 둘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u><br/><u>지원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2018년</u><br/><u>12월 31일까지 둔다.</u></p>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을 “목적 달성에”로 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5년으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운영에 관하여”를 “구성·운영에”로 한다.

제4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학원이상”을 “대학원 이상”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7조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을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일시차입 할”을 “일시차입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복지기금</u>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금의 설치)</b>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3조(기금의 재원)</b> ① 기금은 다음 각 <u>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4.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_____<br/>_____<br/>_____ 경상북도교육청<br/><u>공무원복지기금</u> _____</p> <p><b>제2조(기금의 설치)</b> ① _____<br/>_____ 목적 달성에 _____<br/>_____ 경상북도교육청<br/><u>공무원복지기금</u> _____</p> <p>② _____ 제4조<br/>_____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_____</p> <p><b>제3조(기금의 재원)</b> ① _____ 각<br/><u>호</u>의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자금 소요 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원의 <u>구성·운영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b>제4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다음 <u>각호의</u> 용도로 운용한다.</p> <p>1. ~ 3. (생략)</p> <p><b>제5조(지원대상) ①·②</b> (생략)</p> <p>③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격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대학원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와 당해 연도 졸업생 중 성적우수자로 한다.</p> <p><b>제6조(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b></p> <p>① 기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설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기금 출납원 <u>구조</u>를 설치하여 관리한다.</p> <p>② ~ ④ (생략)</p> <p><b>제7조(사무의 위임)</b>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u>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p>② _____ <u>따른</u> _____</p> <p>③ _____ <u>구성·운영에</u> _____</p> <p><b>제4조(기금의 용도)</b> _____ <u>각호의</u>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b>제5조(지원대상)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u>대학원 이상</u> _____ <u>해당</u> _____</p> <p><b>제6조(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 ①</b> _____ <u>계좌</u> _____</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7조(사무의 위임)</b> _____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u>하급교육행정기관</u> _____</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b>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b></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라 함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b></p> <p>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p> <p>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p> <p>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p> <p>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 <p><b>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_____</p> <p>_____.</p> <p><b>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b></p> <p>① _____</p> <p>각 호의 _____</p> <p>_____.</p> <p>1. 제8조제1항에 따른 _____</p> <p>_____</p> <p>2. 제10조에 따른 _____</p> <p>_____</p> <p>3. 제12조에 따른 _____</p> <p>_____</p> <p>4. 그 밖의 _____</p> <p>_____</p> <p>_____</p> <p>② _____ 필요한 _____</p> <p>_____.</p> |

| 현행  | 개정안  |
|---|--|
| <p><b>제12조(기금결산보고서)</b><br/>           ① (생략)<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3조(기금의 일시차입)</b>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p> <p><b>제15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 <p><b>제12조(기금결산보고서)</b><br/>           ① (현행과 같음)<br/>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_____.</p> <p><b>제13조(기금의 일시차입)</b> ① _____ 일시차입할 _____.<br/>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_____.</p> <p><b>제15조(시행규칙)</b> _____ 시행에 _____.</p>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등 유해성 조사 항목
3.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결과를 반영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와 제5조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조제목은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를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한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p> <p>① (생   략)</p> <p>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 <p>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del>————</del>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p> <p>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p> |

## 二 결 산 안

-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 예 산<br>현 액<br>(A) | 결 산 액      |            |               | 잉 여 금 내 역                                 |                      |            |
|----------------------------|-------------------|------------|------------|---------------|---|----------------------|------------|
|                            |                   | 세 입<br>(B) | 세 출<br>(C) | 차인잔액<br>(B-C) | 이월액                                       | 국 고<br>보 조 금<br>집행잔액 | 순세계<br>잉여금 |
| 합 계                        | 8,515,996         | 8,771,739  | 7,822,643  | 949,096       | 265,071<br>(자금없는<br>이월<br>159,274<br>미포함) | 2,144                | 681,881    |
| 일 반 회 계                    | 7,260,502         | 7,434,689  | 6,785,895  | 648,794       | 264,447<br>(자금없는<br>이월<br>159,274<br>미포함) | 1,870                | 382,477    |
| 특 별 회 계                    | 1,255,494         | 1,337,050  | 1,036,748  | 300,302       | 624                                       | 274                  | 299,404    |
| 공<br>특<br>기<br>별<br>회<br>계 | 655,499           | 731,662    | 458,971    | 272,691       |   |                      | 272,691    |
| 기<br>타<br>특<br>별<br>회<br>계 | 소 계               | 599,995    | 605,388    | 577,777       | 27,611                                    | 624                  | 26,713     |
|                            | 의료급여기금            | 449,106    | 449,097    | 448,337       | 760                                       | 274                  | 486        |
|                            | 치수사업              | 37,030     | 38,435     | 33,609        | 4,826                                     |                      | 4,826      |
|                            | 경북도립대학            | 10,257     | 10,329     | 10,078        | 251                                       |                      | 251        |
|                            | 광역교통시설            | 3,937      | 4,569      | 2,858         | 1,711                                     |                      | 1,711      |
|                            | 원자력발전지역           | 82,580     | 82,999     | 66,447        | 16,552                                    | 624                  | 15,928     |
|                            | 학교용지부담금           | 17,085     | 19,959     | 16,448        | 3,511                                     |                      | 3,511      |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 예 산<br>현 액<br>(A) | 결 산 액      |            |               | 잉 여 금 내 역 |               |            |
|-------|-------------------|------------|------------|---------------|-----------|---------------|------------|
|       |                   | 세 입<br>(B) | 세 출<br>(C) | 차인잔액<br>(B-C) | 이월액       | 국고보조금<br>집행잔액 | 순세계<br>잉여금 |
| 특별회계  | 4,112,258         | 4,125,381  | 3,566,892  | 558,489       | 364,068   | 3,719         | 190,702    |

## 二 동 의 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6월 2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 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개정.

제16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5월 31일)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6조(결산)<br/>           ① 조합장은 <u>출납폐쇄후 3개월이내(5월 31일)에</u>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p> |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6조(결산)<br/>           ① 조합장은 <u>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u>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p> |

## 二 결 의 안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  
결 의 안

경북도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의 절반을 가동하고 있는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도민의 양보와 결단으로 19년간 표류해 오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수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 과정에서 경북을 비롯한 원전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지난 5월 26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를 결의한다.

첫째,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경주 유치 시에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것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일체를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 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임으로 월성본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월성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반대한다.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현행 저장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 경북도내 저장 시설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16년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二 기 타 안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1.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5. 3. 26. 제276회 임시회 의결)

### 2. 활동기간 및 내용

- 활동기간 : 2015. 3. 26. ~ 2016. 6. 25.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276회 임시회 의결, 2015. 3. 26.)
    - 활동기간 : 2015. 3. 26. ~ 2016. 3. 25.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83회 임시회 의결, 2016. 3. 25.)
    - 활동기간 : 2016. 6. 30. 까지
- 활동내용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불일치 및 행정변화 미반영 등의 사유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
  -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정비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중 시급한 조례는 우선 정비하도록 유도

### 3. 활동결과

#### 〈정비대상 조례 발굴 및 정비현황〉

| 구 분    | 대상<br>조례 | 정비조례   |        | 정 비 사 유     |        |             |        |             |        |             |        |             |        |        |        |
|--------|----------|--------|--------|-------------|--------|-------------|--------|-------------|--------|-------------|--------|-------------|--------|--------|--------|
|        |          |        |        | 상위법령<br>불일치 |        | 존 치<br>불 필요 |        | 불필요한<br>규 제 |        | 행정변화<br>미반영 |        | 어문규범<br>위 배 |        | 기 타    |        |
|        |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대<br>상 | 개<br>정 |
| 총계     | 435      | 247    | 74     | 92          | 50     | 13          | 3      | 2           | 2      | 35          | 6      | 71          | 2      | 34     | 11     |
| 의회운영   | 13       | 9      |        | 1           |        |             |        |             |        | 2           |        | 4           |        | 2      |        |
| 기획경제   | 99       | 51     | 14     | 18          | 11     | 8           |        |             |        | 7           | 1      | 13          |        | 5      | 2      |
| 행정보건복지 | 123      | 58     | 12     | 20          | 9      | 2           |        |             |        | 6           | 1      | 21          |        | 9      | 2      |
| 문화환경   | 58       | 40     | 13     | 10          | 6      | 2           | 2      | 1           | 1      | 8           |        | 10          | 2      | 9      | 2      |
| 농수산    | 41       | 35     | 3      | 9           | 1      |             |        | 1           | 1      | 3           |        | 21          |        | 1      | 1      |
| 건설소방   | 44       | 31     | 9      | 19          | 8      |             |        |             |        | 5           |        | 2           |        | 5      | 1      |
| 교 육    | 57       | 23     | 23     | 15          | 15     | 1           | 1      |             |        | 4           | 4      |             |        | 3      | 3      |

- 대상조례 435건 중 정비대상조례는 247건(56.8%)이며, 이중 개정된 조례는 74건(30.0%)
- 정비대상조례 247건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불일치 92건(37.2%), 존치불필요 13건(5.3%), 불필요한 규제 2건(0.8%),
  - 행정변화미반영 35건(14.2%), 어문규범위배 71건(28.7%), 기타 34건(13.8%)
- 개정된 조례 74건의 정비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불일치 50건(67.6%), 존치불필요 3건(4.1%),

- 불필요한 규제 2건(2.7%), 행정변화미반영 6건(8.1%),
- 어문규범위배 2건(2.7%), 기타 11건(14.9%)

#### 4. 향후 활동

- 정비대상조례 247건 중 개정된 74건을 제외한 173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후 조속한 정비를 집행부에 촉구함.
-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빠른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함.

#### 5. 활동 경과

- '15. 1. 26. 광경호 의원 5분 발언(제275회 임시회)
  -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
- '15. 3.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제27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15. 3. 2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및 위원 선임 (제276회 임시회)
- '15. 3. 26. 조례정비특위 제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15. 4. 16. 조례정비특위 실무TF팀 구성 및 회의
- '15. 5. 6.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15. 5. 20. ~ 6. 30. 제1차 조례전수조사

- '15. 7. 1. ~ 7. 31. 조례전수조사 결과 취합 및 검토
- '15. 8. 25. 조례정비특위 제3차 회의(제1차 전수조사결과 보고)
- '15. 9. 1. ~ 10. 30. 제2차 조례전수조사
- '15. 11. 25. 조례정비특위 제4차 회의(제2차 전수조사결과 보고)
- '16. 3. 15. 조례정비특위 제5차 회의(조례정비결과 보고)
- '16. 3. 25. 조례정비특위 활동 연장의 건 본회의 의결  
(제283회 임시회)
  -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2016. 6. 30.까지 연장
- '16. 3. 25. ~ 5. 13. 제3차 조례전수조사
- '16. 6. 7. ~ 6. 8. 조례정비특위 연찬회 개최
- '16. 6. 13. 조례정비특위 제6차 회의(조례정비결과보고서 채택)

# 의정 활동 보고서

(285회 제1차 정례회)



2016. 8. 인쇄 / 2016. 8.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